

# 부천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3월 13일 김제광 의원 등 22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3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4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 제 광 의원)

### □ 제안이유

-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하여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학교급식 지원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시장과 학교장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 배양과 저소득층 학생 우선 무상급식 실시와 학부모 지출 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

- 학교급식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 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학교급식지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재료 사용과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함.(안 제5조)
- 학교급식의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급식,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직영급식 하는 자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여부의 확인과 위생검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 학교급식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대상학교의 학교급식 실시 현황조사,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 학교급식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과 절차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시범사업 연구와 실시계획의 수립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9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교육경비 지출 현황은?</li> <li>○ 학교급식법에 반드시 교육경비로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는지?</li> <li>○ 시정부에서는 아직도 교육경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지?</li> <li>○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에 58억원 정도 교육경비예산으로 배정되었음.</li> <li>○ 법에 교육관련 경비는 교육경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li> <li>○ 네, 그렇습니다.</li> <li>○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은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문구 삽입이 법률적으로 위배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문구가 있으면 행자부에 질의한 바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저촉된다고 회신을 받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범위내에서 10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 안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정된 예산으로는 어느 학교에 지원하느냐에 문제가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느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사업이 끝나는 2010년이 적당할 것으로 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지원시 교육경비에서 얼마정도 가능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경비에서 6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며 전적으로 모두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1인당 100원 지원시 28억원이 들어간다는 근거와 내역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학생을 15만명으로 보고 급식일수를 년 180일로 해서 100원 지원시 약 28억원이 소요됨.</li> </ul>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단서조항)

○ 경기도 조례가 확정되고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추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속기에 명기 함.

# 부천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93호
의결 연월일	2006. 4. 19. (제126회)

제안년월일 : 2006년 4월 17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지방행정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과 함께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에 대한 시민 이해증진 도모를 행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 2. 주요골자

-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수정.(안 제 2조 2호)

# 부천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2호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동일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목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초·중·고등학교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u></p> <p>3.~6. (생략)</p>	<p>제2조(목표) ----- ----- ----- -----.</p> <p>1. (제정안과 같음)</p> <p>2. <u>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u></p> <p>3.~6. (제정안과 같음)</p>

[수정안 포함]

## 부천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부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초·중·고등학교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의 배양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기회 보장
4. 직영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5. 학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점차적 확대
6.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 조례」에 의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지원대상”이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6조에 의한 학교급식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지원의 원칙)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재료 우선 사용 지원
2.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직영급식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3.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 무상급식 학생의 개인정보 등 인권에 관한 사항의 철저한 관리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관내 저소득층 학생급식을 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 중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직영급식을 하는 자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여부의 확인과 위생 검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천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 관련 국장 2인
2. 부천교육청 관련 국장 2인

3. 학부모단체 추천 2인
  4. 교사단체 추천 2인
  5. 시민사회단체 추천 2인
  6. 생산자단체 추천 1인
  7.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1인
  8. 부천시의회 의원 1인
  9.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⑧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
    3.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교급식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과 계획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및 실시계획 수립

⑨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부천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과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의 급식 지원금과 관련된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